

Vol.1543



법원공보

2018. 5. 1. TUE

법원행정처

● 목 차

내규 3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신법령 목록 6

● 내 규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대법원내규 제495호 2018. 4. 16. 결재)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대법원장이 「헌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지명할 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한 의견수렴 및 자문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① 대법원장이 지명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의 추천을 위하여 대법원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선임대법관(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중에서 임명일자, 연장자의 순서에 따른 선순위자)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5.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6.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7.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3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④ 추천위원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추천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며, 추천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주재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사·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추천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써 제척결정을 한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대법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법원장은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해당 안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조(천거절차 등) ①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법원행정처장을 통하여 대법원장에게 서면(모사전송이나 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그 밖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위원이 천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천거는 피천거인의 학력, 경력 등 주요 인적사항 및 천거사유 등을 명시하여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제7조(피천거인의 제시) ① 대법원장은 제6조의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② 대법원장은 제1항의 피천거인을 제시할 때에 학력, 경력, 재산, 병역 등 주요 인적사항을 함께 제출한다.

제8조(후보자의 심사·추천 등) ① 추천위원회는 제7조제1항의 피천거인 가운데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적격으로 판정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한다. 다만,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제6조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하여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의결로써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추천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후보자는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때에는 바로 제1항의 추천 내용을 대법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함에 있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제9조(회의의 공개 등) ① 회의의 절차와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보자의 명단은 공개한다.

② 위원이거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수당 등)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내규는 201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신법령 목록 (2018. 4. 1. ~ 4. 15.)

		공포일	관보호수	관보면수
【법률】				
법률제15309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중정정	2018. 4. 3	19227	4
법률제15494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중정정	"	"	4
법률제15550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18. 4. 6	19230	5
법률제1555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	"	6
【조약】				
조약제2385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메룬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2018. 4. 4	19228	4
조약제2386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2018. 4. 5	19229	4
【대통령령】				
대통령령제28780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2018. 4. 3	19227	5
대통령령제28781호	국제우편규정 전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8782호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4
대통령령제28783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6
대통령령제28784호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7
대통령령제28785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8786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8
대통령령제28787호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4. 10	19232	4
대통령령제28788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4
대통령령제28789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6
대통령령제28790호	주택도시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7

대통령령제28791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8. 4. 10	19232	8
대통령령제2879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9
대통령령제28793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10
대통령령제28794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1
대통령령제28795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3
대통령령제287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	35

【총리령】

총리령제1454호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2018. 4. 11	19233	4
총리령제1453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4. 12	19234	3

【부령】

국토교통부령제504호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4. 2	19226	4
국토교통부령제50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외교부령제54호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4. 3	19227	22
보건복지부령제567호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폐지령	2018. 4. 4	19228	26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2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	2018. 4. 6	19230	10
법무부령제922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4. 9	19231	4
산업통상자원부령제293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제11호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폐지령	2018. 4. 10	19232	36
농림축산식품부령제311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중정정	2018. 4. 11	19233	65
환경부령제75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18. 4. 13	19235	4

